



퇴직연금 DC형 도입 및 중도인출 시행

2012. 8. 1 / 경영지원실 경영지원담당 보수팀

ACTION의 실천이 기업문화 혁신을 완성합니다.



I. 퇴직연금 DC형 도입

II.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행

III. IRP 소개

1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금융기관에 적립한 후,
근로자가 퇴직시 일시금 또는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퇴직급여제도

2

제도 변천

2002. 11 ~ 2011. 4

퇴직보험제도

삼성생명 외 7개
금융기관 분산예치

2011. 4. 29 ~

퇴직연금제도(DB형)

삼성생명 외 22개
금융기관 분산운용

2012. 12 ~

퇴직연금제도(DC형) 추가

기존 DB형에 DC형 제도
추가 도입

※ DB(Defined Benefit), DC(Defined Contribution)

3

DB형 vs DC형 비교

확정급여형(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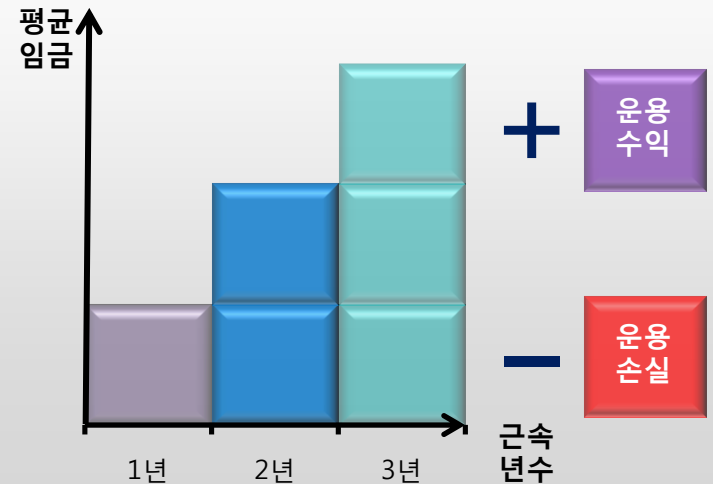
- 퇴직금 수령액 = 평균임금 × 지급률
 ※ 지급률 : 입사일 이후부터 근속년수
 (중간정산자는 중간정산일 익일 이후)



- 퇴직금 제도와 같은 산정방식 적용
- 개인 추가 납입 불가
- 중도인출 불가
- 제도 변경 가능 : DB형 → DC형, 1회에 한함
- 운용수익에 대한 Risk 회사 부담

확정기여형(DC)

- 퇴직금 수령액 = 매년 회사 부담금 ± 운용수익(손실)



- 개인별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수준 변동
- 개인 추가 납입 가능
 ※ 연금저축 포함 연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중도인출 가능, 단 법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 제도 변경 불가
- 운용수익에 대한 Risk 개인 부담

4

DC형 운영방식

구분	운용방식	세부사항
전환선택권 부여대상	직원 中 희망자	· 복지기금 상환금 잔여자 중, 인보증 제출자는 이해보증보험으로 대체 후, DC 전환선택권 부여
회사 부담금 납입주기	연 1회	· 전환 시점의 누계 적립액은 근로자 DC 계좌로 납입 이체 · 1년치 회사 부담금은 매년 12월에 납입 이체 ※ 단, DC전환자는 전환 년도는 전환일 기준 일할계산 적용
DC형 사업자	현재 DB 운영 23개 금융기관 中 선택	· 생명보험 : 삼성, 교보, 대한, 동부, 동양, 미래에셋, ING · 손해보험 : LIG, 현대해상 · 은행 : KB,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하나 · 증권 : 미래에셋, 대우, 삼성, 신한, 한국투자, 현대, HMC
DC형 전환주기	반기 1회 + 법정중도인출 사유자 연2회	· 매년 1, 7월 전환 선택권 부여 · 법정중도 인출 사유자 매년 4, 10월 전환 선택권 추가 부여 ※ 단, 시급을 요하는 법정 사유에 대해서는 수시 접수 가능 (증빙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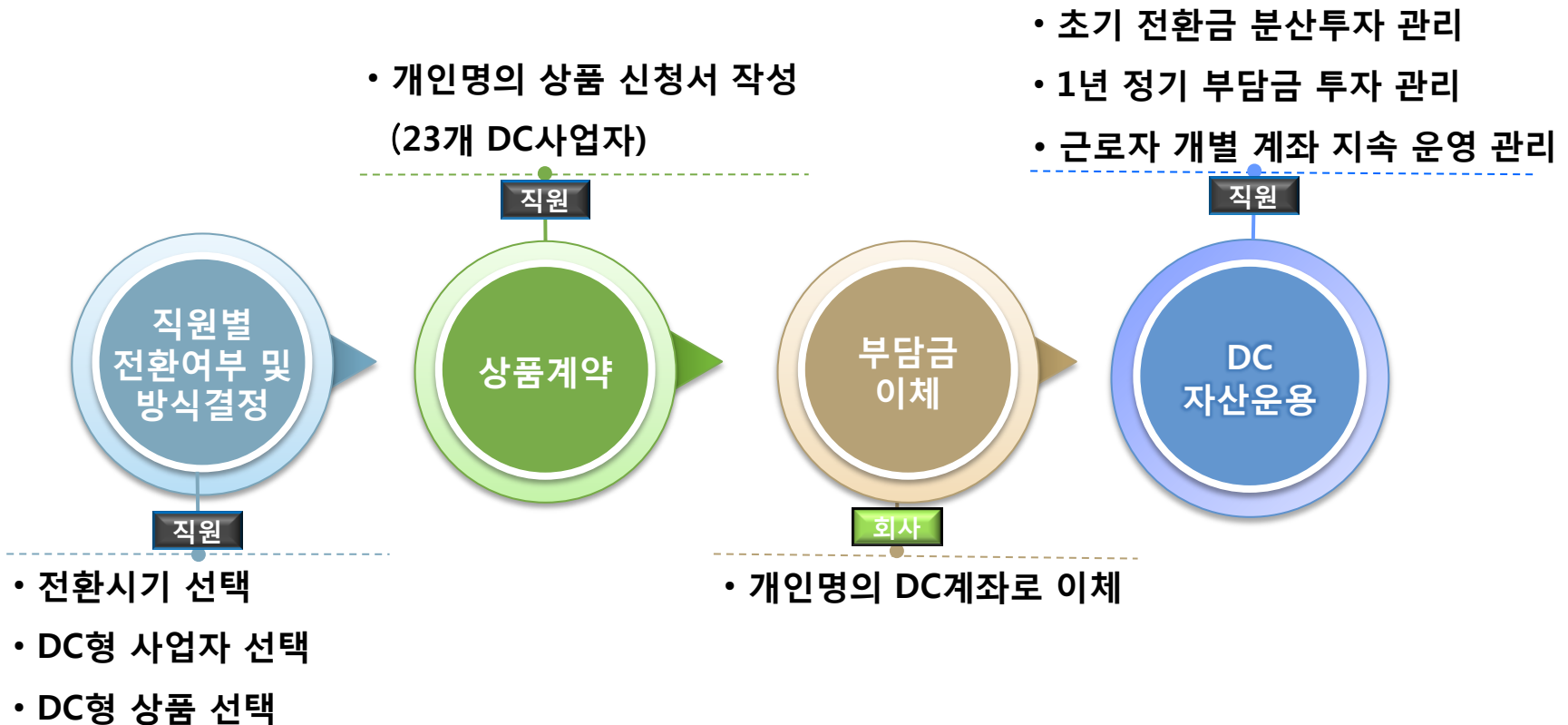
DC형 중도인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증빙서류	발급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 구입하는 경우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주민센터, 구청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진단서	병원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법원결정문	법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결정문	법원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해당 증빙서류로 무주택자임이 불확실할 경우, 추가로 요청한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확인

6

DC형 운영 프로세스



7

전직/이직시 처리절차 및 IRP제도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급여는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이전

- 퇴직일시금을 세제혜택 받으면서
본인계좌에 적립가능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가능
- ※ 가입기간 10년 미만도 수령가능

일시금 수령

-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 연금 수급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금 수령

- 55세 이상이며
- 퇴직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 중도인출자는 재가입시점부터
10년 이상

I. 퇴직연금 DC형 도입

II.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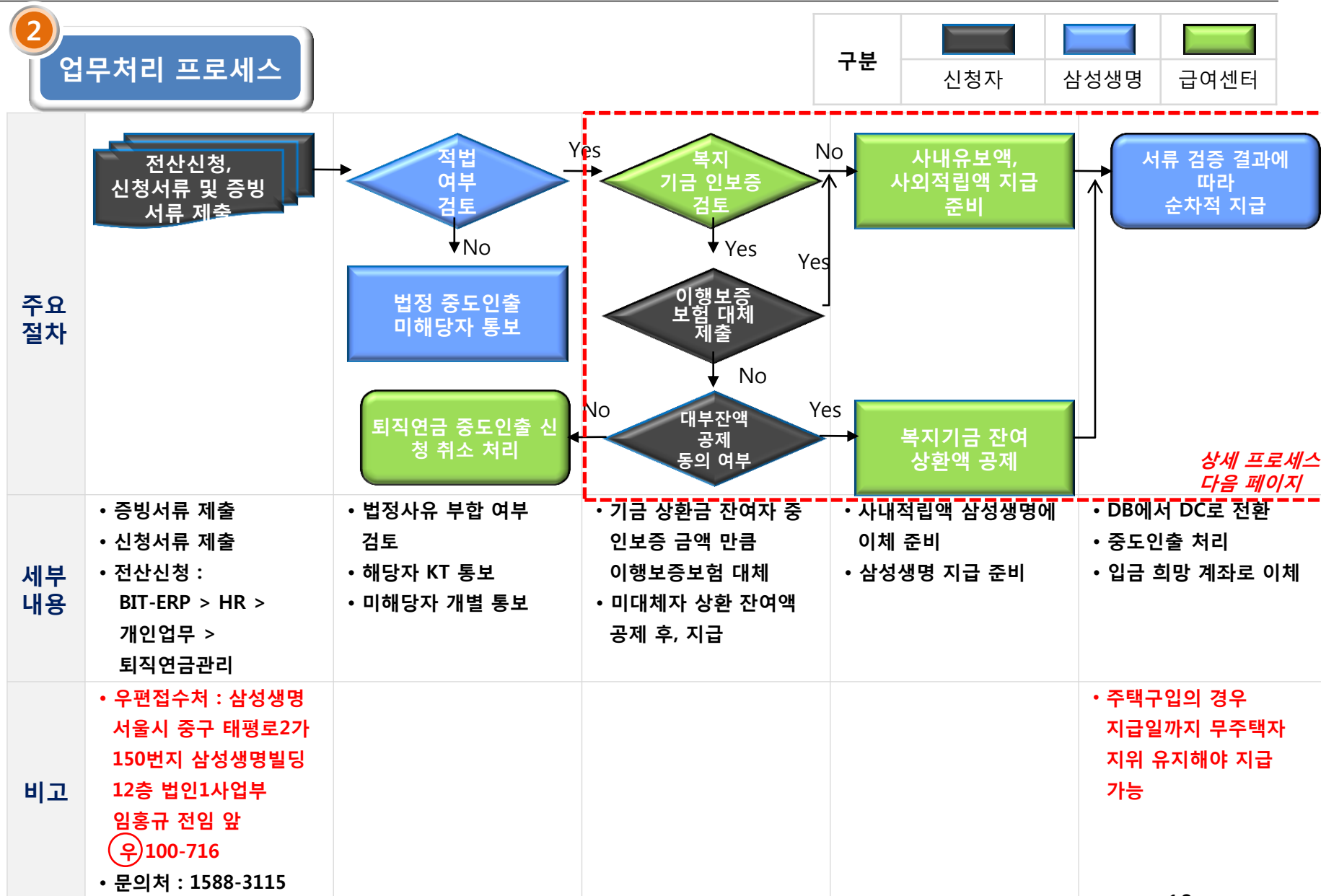
III. IRP 소개

1

주요 내용

- 배경 : DC형 전환 시행전 법정 사유로 인한 긴급자금 필요한 직원에 대한 자금여력 확대
- 대상 : 법정 중도인출 사유를 충족하는 직원
 - ※ 단, 복지기금 상환 대부금 잔여자 중, 인보증 제출자는 이해보증보험으로 대체 조건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이용 요양하는 경우
 -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 퇴직연금 =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 × 근속년수
 - ※ 퇴직연금 중도인출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및 퇴직 지급률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됨
- 주요일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 8.6(월) ~ 9.7(금)
 - 순차적 지급 : ~ 9.28(금)

표. 한시적 중도인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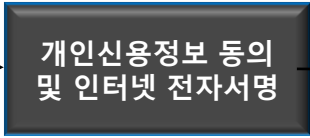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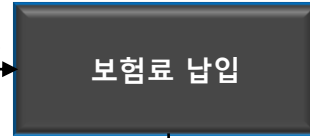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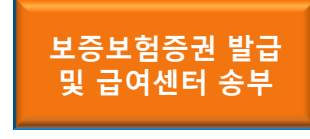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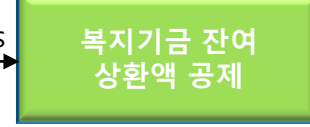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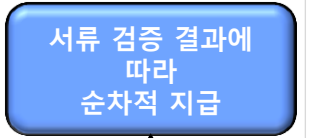


II. 한시적 중도인출 시행

3

보증보험 가입 프로세스

구분	신청자	삼성생명	급여센터	서울보증보험
----	-----	------	------	--------

주요 절차			  	  	
세부 내용	- 증빙서류 정상 접수자 통보(삼성생명→KT) - 개인별 상환잔여 금액 및 잔여상환기간 통보(KT→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가입 가능 여부 확인, 개인별 보험료 산정 후 통보 (신용등급 제한으로 인한 미발급자는 개별 통보)	-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보험 발급가능여부 확인 - 발급 미가능 인원 별도 통보(SMS) - 해당자 대부잔액 공제 동의 여부 결정		- 입금 희망 계좌로 이체 - 퇴직소득세, 주민세 공제 후 입금 - 조회사이트 : KATE>BIT ERP>HR>개인업무>퇴직금>퇴직금개산조회
비고	- 증빙서류 하자 접수자는 삼성생명에서 개별 통보 - 문의처 : 1588-3115	- 개인신용정보 동의 및 인터넷 전자서명 시 공인인증서 필수 - 접속사이트 : http://egis.sgic.co.kr - 세부절차 : http://blog.naver.com/77fineart - 보증보험 가입문의 : ①주택기금 대부자 - 서울보증보험 김병호 과장님(031-704-0054, 0042) ②생활안정자금 대부자 - 서울보증보험 이대실님/강연숙님(031-707-2125) - 본사 업무지원센터 문의 : 주택기금(김혜림 031-727-4231)/생활안정자금(장미미 031-727-4236)			주택구입의 경우 지급일까지 무주택자 지위 유지해야 지급 가능

I. 퇴직연금 DC형 도입

II.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행

III. 개인퇴직연금제도(IRP) 소개

Ⅲ. 개인연금퇴직제도(IRP) 소개

1

IRP란?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임직원이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넣는 전용계좌입니다.

2

제도 특징

이직/퇴직시 퇴직금은 IRP 계정으로만 수령 가능

2012.7.26일 이후 DB/DC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은 은행 예금계좌가 아닌
가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IRP계정으로 입금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자금도 납입 가능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
(단, 퇴직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한도에서 제외)

적립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55세 이후)으로 수령 가능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면 퇴직소득세 납부,
55세까지 운용하여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납부

Ⅲ. 개인연금퇴직제도(IRP) 소개

3

IRP 과세방법

IRP로 지급되는 **퇴직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시기를 IRP해지시점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및 과세방법]

구 분	퇴직금 지급계좌	퇴직시점에 퇴직금에 대한 과세방법	운용 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IRP에서 적립금 수령 시 과세방법	
				일시금으로 수령 시	연금으로 수령 시
7.26일 이전	개인통장	퇴직소득세 과세	이자소득세 과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	
7.26일 이후	IRP계정	과세하지 않음	과세하지 않음	퇴직소득세 과세	연금소득세 과세

• 과세이연

퇴직금 수령시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퇴직금 원금에 이자수익을 더하여 실제로 근로자가 수령하는 시점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하는 것

• 퇴직소득세

평균적인 근로자들의 퇴직소득세율은 약 3~7%로, 이자소득세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Ⅲ. 개인연금퇴직제도(IRP) 소개

4

추가납입 및 소득공제

IRP에 개인자금을 납입할 경우에는,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400만 원(소득공제 최대한도) 납입 가정 시, 소득공제 효과]

소득공제	과세표준 (소득금액) 구간	세율 (소득세 + 주민세)	최대 절세효과 (소득공제액 × 세율)
400 만원	1,200만 원 이하	6.6%	264,000원
	4,600만 원 이하	16.5%	660,000원
	8,800만 원 이하	26.4%	1,056,000원
	3억 원 이하	38.5%	1,540,000원
	3억 원 초과	41.8%	1,672,000원

- IRP에 개인자금을 납입할 경우, 세제적격개인연금저축 불입액 및 DC퇴직연금 추가납입금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
- 위 소득혜택은 개인별 소득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 가능